

『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0년도 구미시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구미시의회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- 출연예정금액 : 67,095천원
- 출연필요성
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고, 또한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출연금에 해당.
- 법적근거 :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

4. 참고사항

○ 첨부서류

- 출연 동의요구서(붙임)
-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(붙임)
- 출연기관 현황(붙임)
- 출연 사업계획서(붙임)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○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편성(67,095천원)

○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,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,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4,473억원)의 1.5/10,000에 해당하는 67,095천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 결과,

-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출연규모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음.
-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, 지방세제의 발전 연구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